

■ 최신 법령 ■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

1. 개정 목적

2017년 8월 7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일부개정령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,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, 산업현장 중대사과의 예방과 대응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200명(6급 68명, 7급 132명)을 증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.

2. 개정 내용

가. 제6조의2제3항제4호의2 중 '정부3.0'을 '정부혁신'으로 한다.

나. 별표 3 중 총계 '5,294'를 '5,494'로 하고, 일반직 계 '5,293'을 '5,493'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'5,264'를 '5,464'로 한다.

3. 다운로드 : [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\(2017. 8. 7. 시행\)](#)